

##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4년 1월 10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

###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

청구권자 총수	내 국 인	외 국 인	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(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)
	18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(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	18세 이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(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	
323,344명	322,095명	1,249명	4,620명

※ 인구수 기준시점 : 2023.12.31. 현재